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1875호
2024년 2월 15일
목요일

고 시

○ 고 시 제 1 5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2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고 시

남동구 고시 제2024-15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2. 15.

남 동 구 청 장

○ 부여대상 도로명주소: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195번길 56 (장수동)

연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효력발생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비고
별 도 열 람 (1건)			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(☎032-453-2474)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(www.namdong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2014. 01. 01.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,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연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효력발생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58-14	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195번길 56 (장수동)	2009.11.16.	만의골로 시작지점에서부터약196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	2024.2.15.	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의골로195번길 기초구간에위치하여56을건물 번호로부여	